



최저임금 미달 여부

판단방법

예시 01 시간급인 경우

: 1시간에 8,000원의 시간급을 받는 경우

$$\begin{array}{r} \text{시간급} \\ 8,000\text{원} \end{array} < \text{최저임금법 위반} \quad 8,350\text{원}$$

설명_ 2019년도 최저임금 8,350원보다 적으므로 최저임금법 위반

예시 02 일급인 경우

: 1일 8시간 근로하고 일급 64,000원을 받는 경우

$$\begin{array}{r} 64,000\text{원} \\ \div 8\text{시간} \\ 8,000\text{원} \end{array} < \text{최저임금법 위반} \quad 8,350\text{원}$$

설명_ 64,000÷8시간=8,000원은
2019년도 최저임금 8,350원보다 적으므로 최저임금법 위반

예시 03 주급인 경우

: 1일 4시간, 1주일(5일) 간 총 20시간 근로(개근)하고 주급 192,000원

$$\begin{array}{r} 192,000\text{원} \\ \div 24\text{시간} \\ 8,000\text{원} \end{array} < \text{최저임금법 위반} \quad 8,350\text{원}$$

설명_ 192,000원÷24시간(주5일 20시간+유급주휴 4시간)=8,000원은
2019년도 최저임금 8,350원보다 적으므로 최저임금법 위반
※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계산하여야 함

예시 04 월급인 경우

: 1주 40시간(주 5일, 1일 8시간)을 근로하고 월급 1,672,000원을 받는 경우

$$\begin{array}{r} 1,672,000\text{원} \\ \div 209\text{시간} \\ 8,000\text{원} \end{array} < \text{최저임금법 위반} \quad 8,350\text{원}$$

※ 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인 경우 월환산 기준 시간수=209시간
{(주당 소정근로시간 40시간+유급주휴 8시간)×365일÷7일}÷12월=209시간

: 1주 44시간(월~금 8시간 토 4시간)을 근로하고 (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) 월급 1,808,000원을 받는 경우

$$\begin{array}{r} 1,808,000\text{원} \\ \div 226\text{시간} \\ 8,000\text{원} \end{array} < \text{최저임금법 위반} \quad 8,350\text{원}$$

※ 주 소정근로시간 44시간인 경우 월환산 기준 시간수=226시간
{(주당 소정근로시간 44시간+유급주휴 8시간)×365일÷7일}÷12월=226시간

주휴수당은 이란?

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가 1주일 동안 개근한 경우 주 1회 이상의 휴일을 부여하여야 하는데, 이때 유급으로 지급하는 수당이 주휴수당입니다. 주5일, 주40시간 미만 근로자라도 주 15시간 이상 근로하면 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.

누가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?

1주일에 평균 15시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가 대상이 되며, 1일 임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. 예를들어 하루에 8시간씩 근무하는 경우에는 8시간에 대한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국번없이 1350

고용노동부 상담전화

서울지방고용노동청

서울지방고용노동청	02)2231-0009	서울남부지청	02)2639-2100
서울강남지청	02)584-0009	서울북부지청	02)950-9880
서울동부지청	02)403-0009	서울관악지청	02)3281-0009
서울서부지청	02)713-0009		

중부지방고용노동청

중부지방고용노동청	032)460-4545	안산지청	031)412-1992
인천북부지청	032)540-7910	평택지청	031)646-1114
부천시청	032)714-8700	강원지청	033)269-3551
의정부지청	031)877-0009	강릉지청	033)650-2500
고양지청	031)931-2800	원주지청	033)769-0800
경기지청	031)259-0204	태백지청	033)552-0009
성남지청	031)788-1505	영월출장소	033)374-0009
안양지청	031)463-7300		

부산지방고용노동청

부산지방고용노동청	051)853-0009	울산지청	052)272-0009
부산동부지청	051)559-6688	양산지청	055)387-0009
부산북부지청	051)309-1500	진주지청	055)752-0009
창원지청	055)239-6500	통영지청	055)645-0009

대구지방고용노동청

대구지방고용노동청	053)667-6200	구미지청	054)450-3500
대구서부지청	053)605-9000	영주지청	054)639-1111
포항지청	054)271-6700	안동지청	054)851-8000

광주지방고용노동청

광주지방고용노동청 (제주근로개선지도과)	062)975-6200 (064-728-6100)	군산지청	063)452-0009
전주지청	063)240-3400	목포지청	061)280-0100
익산지청	063)839-0008	여수지청	061)650-0108

대전지방고용노동청

대전지방고용노동청	042)480-6290	충주지청	043)840-4000
청주지청	043)299-1114	보령지청	041)931-6640
천안지청	041)560-2800		

www.minimumwage.go.kr



시간급 최저임금

8,350원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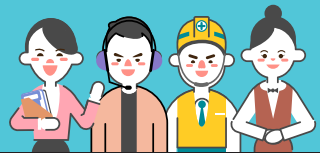
월환산액 1,745,150원 : 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,
월 환산기준 209시간(주당 유급주휴8시간 포함)



최저임금제도는
국가가 **임금의 최저수준**을 정하고
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
임금을 지급하도록
법으로 강제하는 제도입니다.



2019.1.1.~2019.12.31. 적용



최저임금 위반 상담 및 신고

상담 : 국번없이 **1350**

위반신고 :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(지청)

최저임금

&

Q & A

Q
A

최저임금이 적용되는 사업장과 근로자는 어떻게 되나요?

- 근로자 1명 이상인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됩니다.
다만,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사용인, 선원법을 적용 받는 선원과 선원을 사용하는 선박 소유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.
- 근로기준법상 근로자(정규직, 파트타임, 아르바이트 학생, 외국인 근로자 등)는 모두 적용됩니다.
다만, 정신 또는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아 고용노동부장관의 적용제외 인가를 받은 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.

Q
A

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하는 근로자는?

- 수습사용 중에 있는 자(1년 미만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제외)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근로자는 최저임금액의 10%를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.
※ 다만, 단순 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(한국표준직업분류상 대분류9(단순노무종사자)에 해당하는 사람)는 수습여부·계약기간에 관계없이 최저임금 100%를 지급하여야 합니다

Q
A

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반드시 알려주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?

- 사용자는 '①최저임금액, ②적용제외 근로자의 범위, ③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임금, ④최저임금의 효력발생 연월일'을 근로자가 쉽게 볼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그 외 적당한 방법으로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합니다.
※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등을 알려주지 않을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.

Q
A

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과 산입되지 않는 임금은 어떻게 되나요?

-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은 근로기준법상 임금으로서 **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** 지급하는 임금
- 다만, 아래의 임금은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음

1. 통화 이외의 것(현물)으로 지급하는 임금
2.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
→ 연장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한 임금 및 연장·야간 또는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,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당,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임금
3. ①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걸친 해당 사유에 의하여 산정하는 상여금 등의 25%(최저임금 월 환산액 기준)
② 식비, 숙박비, 교통비 등 근로자의 생활보조 또는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임금의 7%(최저임금 월 환산액 기준)
→ 위 금액에 초과하는 부분은 최저임금 산입
→ 이후 5년에 걸쳐 최저임금에 미산입되는 비율을 단계적으로 축소(2024년부터는 전부산입)
※ '최저임금 월 환산액'이란?
고시된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월 단위로 환산한 금액(1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, 월 환산기준 209시간(유급주휴 8시간)의 경우: 1,745,150원)

취업규칙 변경절차의 특례

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에 포함시키기 위하여 1개월을 초과하는 주기로 지급하는 임금을 총액의 변동 없이 매월 지급하는 것으로 취업규칙 변경시 근로자의 과반수(과반수 노동조합이 있으면 그 노동조합)의 의견청취 필요

Q
A

사용자가 최저임금에 미달하여 임금을 지급한 경우 어떤 처벌을 받나요?

-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거나, 이 두 가지 벌칙을 같이 받을 수 있습니다.

Q
A

최저임금액보다 낮은 임금을 지급 받기로 한 근로계약은 유효한가요?

-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한 금액을 임금으로 정하였다면 이렇게 정한 임금 부분은 무효이고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.



최저임금 미달 여부 판단방법

[소정근로시간이 1주 40시간인 근로자가
2019년 2월 급여 1,975,500원을 받는 경우]

월급명세서

기본급	1,500,000원
직무수당	150,000원
교통비	50,000원
식대	50,000원
시간외수당	105,000원
상여금	125,000원
급여계	1,975,500원

※상여금은 기본급의 연 100%
(1,500,000원을 12개월로 나눠서
매월 지급)

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

기본급	1,500,000원
직무수당	150,000원
상여금	0원*
식대·교통비중	0원**
임금 계	1,650,000원

* 상여금 125,000원중 2019년 월환산액 1,745,150원의 25% 초과금액
** 식대·교통비 100,000원중 2019년 월환산액 1,745,150원의 7% 초과금액

추려낸 임금을 시간당 임금으로 환산

1,650,000원 ÷ 209시간 ≒ 7,895원 < 8,350원

∴ **최저임금 위반**

